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112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소송대리인 G

6. H

7. I

8. J

9. K

10. L

11. M

변 론 종 결 2020. 4. 28.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각 1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H는 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 K, L, M는 각 2/9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나. 피고 C, E은 각 439,600원을, 피고 K는 67,600원을 각 지급하고,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철거일까지, 피고 C은 2019. 12. 24.부터 월 14,7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2019. 12. 20.부터 월 14,7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K는 2020. 3. 7.부터 월 2,2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N은 1940년경 경북 울진군 O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9.4㎡ 지상에 목조 스투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망 N은 1991. 2. 27. 사망하였고, 피고 F은 이 사건 주택 소유권 중 13/91 지분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3) 원고는 1991.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13/91 지분 소유权人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3/91 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F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주택의 13/91 지분 소유权人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F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위 피고들에게 위 피고들의 각 지분만큼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피고 C, E, K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9. 7. 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2019.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철거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

별지